학교법인삼일학원

2025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15인	2인
재적임원	11인	2인
참석임원	8인	0인

1. 회의일시 : 2025년 4월 28일(월) 15:00 (서면통보일 : 2025년 4월 18일)
2. 장　　소 : 삼일고등학교 [엘림관 1층 톡톡실]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임원(가나다순)
   – 이사(8인) : 김보기,박성덕,손금주,손형우,이성택,이홍림,조기형,하근수
   – 감사(0인) : –
   ○ 불참임원
   – 이사(3인) : 김종복, 양명환, 이영호
   – 감사(2인) : 김성태, 마상혁
4. 안 건
   가. 교원 임용(안)_ 석좌교수 및 명예교수 추대
   나. 협성대학교 규정 개정(안)
   –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안)
   – 협성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 교직원보수규정시행내규 개정(안)
   다. 정관 시행세칙 폐지(안)
   라. 기타사항
5. 회의내용
   가. 개회선언
   의장은 금일 회의 소집에 대한 인사말씀에 이어 회의 성원이 되었음을 말하고 개회선언한 후 의장은 전차 회의록에 대한 전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차 회의록을 그대로 받다. (하근수 감독 기도하다.)

하근수	손금주	이홍림

나. 보고사항

의장은 이흥림 이사가 교통상황으로 30분정도 늦으신다고 하니 먼저 학교 현황 보고를 받고 이흥림 이사가 도착하면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다. 서명수 총장에게 대학 현황 보고를 요청하고 법인 산하 각 기관장들이 배석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요청하다.

〈법인 산하 각 기관장 입실하고, 대학현황 보고를 위해 교무처장, 총무팀장, 기획팀장도 입실하다.〉

ㅇ 대학은 교육부 종합감사 주요내용 및 현재 추진 사업 중점으로 보고 하고, 삼일공고, 삼일고등학교, 삼일중학교 순서대로 학교 현황 보고를 받다.

〈15:26 이흥림 이사 회의장에 입실하다.〉

ㅇ 장성은 교장은 협약형 특성화고 준비에 따른 삼일공고 학과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 첨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다.

〈각 기관장들은 회의장에서 퇴실하다.〉

ㅇ 의장은 법인 산하 각 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 및 학교 현황을 임원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한 법인내 학교장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는 이사회때마다 기관장들에게 학교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

다. 심의안건

□ 제 1 호 : 교원 임용(안)

의 장(이사장): 제1안 ‘ 교원 임용 안’ 발의.

의장은 협성대학교 석좌교수 및 명예교수 추대 승인건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니 이찬석 교무처장은 첨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석좌교수 및 명예교수 추대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하고 이사님들의 질문에 답하다.

의장이 명예교수 추대 기준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박성덕 이사 동의, 참석이사의 의견을 물으니 전원 찬성하다. 석좌교수와 명예교수 추대 승인 건에 대하여 하근수 이사가 동의하고, 이에 조기형 이사가 재청하니 참석이사 전원(8인)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다.

1. 석좌교수 : 세무회계학과 장영란 2025.05.01.~2026.04.30.(1년)
2. 명예교수 : 2025.05.01.자 음악학부 실용음악전공 이미혜, 문예창작학과 박영호

하근수		이흥림

□ 제 2 호 : 협성대학교 규정 개정(안)

의 장(이사장): 제2안 ‘ 협성대학교 규정 개정(안) 발의.
의장은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 안, 협성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 안, 교직원보수규정시행내규 개정 안에 대하여 대학측에 설명을 요청하다. 이에 이찬석 교무처장, 이제호 총무팀장, 조수연 기획팀장은 첨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사들의 질문에 답하니, 이성택 이사가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박성덕 이사가 재청하니 참석이사 전원(8인) 찬성으로 **【별첨 1】** 같이 의결하고, 학생 이탈율을 줄이기 위한 TF를 구성하여 학과별 학생 이탈을 막을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교무처장, 총무팀장 회의장에서 퇴실하다.〉

□ 제 3 호 : 삼일학원 정관 시행세칙 폐지(안)

의 장(이사장): 제3안 ‘ 정관 시행세칙 폐지(안) 발의.
의장은 현행 정관 시행세칙에 명시된 사항은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정관하고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소명한 바 있고, 현재 시행세칙에 명시된 사항은 사립학교법 등 법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할 이유가 없으니 폐지함이 합당하다고 하다. 개방이사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 이사회 추천 등으로 구성된 개방이사추천위원에서 선임하고 있으니 특정인을 개방이사로 추천 또는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에도 맞지 않음을 설명하고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이에 하근수 이사가 동의하고, 이홍림 이사가 재청하니 참석이사 전원(8인) 찬성으로 의결하다.

구분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시행체칙 」 폐지 (2025.04.28.)
설치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3조 제1호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3조 제2호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3조 제3호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3조 제4호
이사선임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4조
임용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6조 제1호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6조 제2호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6조 제3호

하근수	[illegible]	이 홍림

구분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시행체칙 」 폐지 (2025.04.28.)
임용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6조 제4호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6조 제5호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7조 제1호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7조 제2호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7조 제3호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8조
재산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2조
회계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5조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6조~제21조
분과위원회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22조
	「학교법인 삼일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24조

【 기타협의사항 】

□ 삼일공고 학과 개편(안)

〈삼일공고 학과 재구조화 관련 건으로 장성은 교장, 김기남 교장 회의장에 입실하다.〉

① 장성은 교장은 삼일공고 협약형 특성화고 준비를 위해 교육부에 사업 신청이 진행중에 있니 6월초 최종 선정이 되면 학과 개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니 그때 삼일고 학과 명칭과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서 변경안을 올리겠다고 설명하니 이에 김기남 교장도 서로 합의하여 갈등 없이 잘 조정하겠다고 보고하다. 의장은 삼일공고 학과 개편(안) 계획에 대한 사전 보고임을 확인하니 장성은 교장은 "예" 라고 답하다.

② 2025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 교섭 위원을 5인으로 구성, 대표 교섭 위원으로 총장 외 교원 2명, 직원 2명으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이사들의 의견을 물으니 참석 이사 전원 찬성하다.

③ 의장은 이사회 참석 임원을 대표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할 3인 이사를 본인을 포함하여 하근수 이사, 이홍림 이사로 하기로 하다. (이사들 전원 찬성하다.)

④ 법인사무국 과장은 회의를 마치기 전에 민감한 회의내용은 「비공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을 이사들에게 설명하다. 이에 의장은 이사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민감한 내용은 「비공개」 하기로 전원 찬성하다.

⑤ 의장은 차기 이사회 날자 논의는 식사 장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폐회하자는 제안에 이성택 이사 동의, 조기형 이사 재청으로 폐회하기로 하고, 조기형 이사가 폐회기도 하다.

하근수	조기형	이홍림

▸ **폐 회 선 언**

(폐회를 선포【 18 : 00 】하고 위 의결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 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학교법인 삼일학원	이사장	손 금 주	손금주
(가나다순)	이 사	김 보 기	김보기
	〃	김 종 복	(불참)
	〃	박 성 덕	박성덕
	〃	손 형 우	손형우
	〃	이 성 택	이성택
	〃	이 영 호	(불참)
	〃	이 홍 림	이홍림
	〃	양 명 환	(불참)
	〃	조 기 형	조기형
	〃	하 근 수	하근수
	감 사	김 성 태	(불참)
	〃	마 상 혁	(불참)

하근수	손금주	이홍림

[별첨 1]

□ 협성대학교 규정 개정(안)

1. 협성대학교 학칙 개정

현 행

[별표 1] 대학 입학정원 및 학위 종별표

자. 2025학년도 입학정원 및 학위 종별표

대 학 명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위명
자율전공학부		185	-
웨슬리대학	생략		생략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이공대학			
예술대학			
웨슬리창의융합대학		-	-
융복합 전공	생략		생략
합 계		1,004명	-

[별표 1-2] 계약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 종별표

라. 2025학년도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대학명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위명	비고
계약학부	아동보육학과	25	문학사	정원외 모집, 재교육형
	사회복지학과	25	문학사	
총 계		50명		

[별표 2]학위증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아래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전 공 ○○○○ (○○학사)
일반복수전공 ○○○○ (○○학사)
융복합복수전공 ○○○○트랙(○○학사)
<신설>
일반부전공 ○○○○
융복합부전공 ○○○○트랙
<신설>
<신설>

년 월 일

협성대학교 총장 ○○박사 ○○○

학위등록번호 :

개정

[별표 1] 대학 입학정원 및 학위 종별표(개정 2025.04.28.)

차. 2026학년도 이후 입학정원 및 학위 종별표

대 학 명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위명
웨슬리대학	현행유지		현행유지
인문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이공대학			
예술대학			
미래창의융합대학	자율전공학부	185	-
	교양학부	-	
융복합 전공	현행유지		현행유지
합 계		1,004명	-

[별표 1-2] 계약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 종별표 (개정 2025.04.28.)

라. 2025학년도 이후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대학명	모집단위	입학정원	학위명	비고
계약학부	아동보육학과	25	문학사	정원외 모집, 재교육형
	사회복지학과	25	문학사	
총 계		50명		

[별표 2]학위증(개정 2025.04.28.)

제 호

학 위 증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아래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전 공 ○○○○ (○○학사)
일반복수전공 ○○○○ (○○학사)
융복합복수전공 ○○○○트랙(○○학사)
자기설계복수전공 ○○○○ (○○학사)
일반부전공 ○○○○
융복합부전공 ○○○○트랙
자기설계부전공 ○○○○
마이크로디그리 ○○○○

년 월 일

협성대학교 총장 ○○박사 ○○○

학위등록번호 :

차경수 고홍주 이홍라

현 행	개정
<삽 입>	부 칙(2025.04.28.)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협성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

현 행

제8장 직제 및 위원회

제37조【대학원위원회】① : 생략

②각 위원회는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각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별표 1] 학년도별 대학원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마. 2025학년도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대학원	구분	학위	학과	전공	정원	학위구분	학위표기방법
일반대학원	대학원	석사	생략				
		박사	신학과	구약학, 신약학, 교회사, 직신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윤리학, 선교와문화, 목회상담, 예배와설교, 기독교영성학	20	학술학위	신학박사
			사회복지학과	생략			
			경영학과				
특수대학원	생략						
합계					149명		

[별표 1-2] 대학원 계약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표기방법

라. 2025학년도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대학원	구분	학위	학 과	정 원	학위표기방법	비고
일반대학원	대학원	석사	산업안전보건학과	20	이학석사	
		박사	생략			
특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교육대학원	석사				
총 계				150명		

<삽 입>

개정

제8장 직제 및 위원회

제37조【대학원위원회】① : 현행유지

②각 위원회는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며, 각 대학원위원회는 각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25.04.28.)

[별표 1] 학년도별 대학원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개정 2025.04.28.)

마. 2025학년도 이후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대학원	구분	학위	학과	전공	정원	학위구분	학위표기방법
일반대학원	대학원	석사	현행유지				
		박사	신학과	구약학, 신약학, 교회사, 직신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윤리학, 선교와문화, 목회상담, 예배와설교, 기독교영성학, 웨슬리스터디	20	학술학위	신학박사
			사회복지학과	현행유지			
			경영학과				
특수대학원	현행유지						
합계					149명		

[별표 1-2] 대학원 계약학과 입학정원 및 학위표기방법 (개정 2025.04.28.)

라. 2025학년도 이후 입학정원 및 학위종별표

대학원	구분	학위	학 과	정 원	학위표기방법	비고
일반대학원	대학원	석사	산업안전보건학과	20	공학석사	
		박사	현행유지			
특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교육대학원	석사				
총 계				150명		

부 칙(2025.04.28.)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2025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교직원보수규정시행내규 개정 신구대조표

<table>
<tr><th>현 행</th><th>개정</th></tr>
<tr><td>제4조【비정년직 전임교원의 보수】 ① : 생략
②비정년직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중점교원의 보수는 이 시행내규 [별표 5]와 [별표 5의2]에 따른다.
③ : 생략</td><td>제4조【비정년직 전임교원의 보수】 ① : 현행유지
②비정년직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중점교원의 보수는 이 시행내규 [별표 5]에 따른다. 단, IPP(일학습병행제)전담 산학협력중점교원의 보수는 일학습병행 사업지침 및 사업 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5.04.28.)
③ : 현행유지</td></tr>
<tr><td>[별표 5의2] IPP(일학습병행제)전담 산학협력중점교수 보수표
IPP(일학습병행제)전담
산학협력중점교수 보수표
(연봉액, 단위: 원)
<table>
<tr><th>연봉총액</th><th>지급방법</th><th>비 고</th></tr>
<tr><td>43,000,000</td><td>12개월 분할지급</td><td>호봉승급 없이 고정지급</td></tr>
</table></td><td>[별표 5의2] 삭제(2025.04.28.)</td></tr>
<tr><td>제12조【정액급식비】호봉제 교직원에게 매월 130,000원의 정액 급식비를 지급한다.</td><td>제12조【정액급식비】호봉제 교직원 및 연봉제 정규직 직원(무기계약직 직원 포함)에게 매월 130,000원의 정액 급식비를 지급한다.(개정 2025.04.28.)</td></tr>
<tr><td>[별표 5] 산학협력중점교원 보수표
산학협력중점교원 보수표
(월지급액/연봉액, 단위 : 원)
<table>
<tr><th>호봉</th><th>연봉월액</th><th>연봉액</th><th>호봉</th><th>연봉월액</th><th>연봉액</th></tr>
<tr><td>1</td><td>2,150,000</td><td>25,800,000</td><td>11</td><td>2,860,000</td><td>34,230,000</td></tr>
<tr><td>2</td><td>2,224,000</td><td>26,688,000</td><td>12</td><td>2,937,000</td><td>35,244,000</td></tr>
<tr><td>3</td><td>2,298,000</td><td>27,576,000</td><td>13</td><td>3,014,000</td><td>36,168,000</td></tr>
<tr><td>4</td><td>2,372,000</td><td>28,464,000</td><td>14</td><td>3,091,000</td><td>37,092,000</td></tr>
<tr><td>5</td><td>2,446,000</td><td>29,352,000</td><td>15</td><td>3,168,000</td><td>38,016,000</td></tr>
<tr><td>6</td><td>2,520,000</td><td>30,240,000</td><td>16</td><td>3,245,000</td><td>38,940,000</td></tr>
<tr><td>7</td><td>2,594,000</td><td>31,128,000</td><td>17</td><td>3,322,000</td><td>39,864,000</td></tr>
<tr><td>8</td><td>2,668,000</td><td>32,016,000</td><td>18</td><td>3,399,000</td><td>40,788,000</td></tr>
<tr><td>9</td><td>2,742,000</td><td>32,904,000</td><td>19</td><td>3,476,000</td><td>41,712,000</td></tr>
<tr><td>10</td><td>2,816,000</td><td>33,792,000</td><td>20</td><td>3,553,000</td><td>42,636,000</td></tr>
</table>
1. 산학협력중점 교수 봉급표는 급여변동률과 상관없이 고정하여 운영함.
2. 호봉의 승급은 1년간 1회로 하되 매월 1일로 함.
3. 호봉 간 월 급여 차액은 74,000원으로 함.
4. 20호봉 이상은 가산 호봉 없이 20호봉에 준하여 고정 지급함.
5.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책정함.
6.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7. 11~20호봉 구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함.</td><td>[별표 5] 산학협력중점교원 보수표(개정 2025.04.28.)
산학협력중점교원 보수표
(월지급액/연봉액, 단위 : 원)
<table>
<tr><th>호봉</th><th>연봉월액</th><th>연봉액</th><th>호봉</th><th>연봉월액</th><th>연봉액</th></tr>
<tr><td>1</td><td>2,150,000</td><td>25,800,000</td><td>11</td><td>2,890,000</td><td>34,680,000</td></tr>
<tr><td>2</td><td>2,224,000</td><td>26,688,000</td><td>12</td><td>2,964,000</td><td>35,568,000</td></tr>
<tr><td>3</td><td>2,298,000</td><td>27,576,000</td><td>13</td><td>3,038,000</td><td>36,456,000</td></tr>
<tr><td>4</td><td>2,372,000</td><td>28,464,000</td><td>14</td><td>3,112,000</td><td>37,344,000</td></tr>
<tr><td>5</td><td>2,446,000</td><td>29,352,000</td><td>15</td><td>3,186,000</td><td>38,232,000</td></tr>
<tr><td>6</td><td>2,520,000</td><td>30,240,000</td><td>16</td><td>3,260,000</td><td>39,120,000</td></tr>
<tr><td>7</td><td>2,594,000</td><td>31,128,000</td><td>17</td><td>3,334,000</td><td>40,008,000</td></tr>
<tr><td>8</td><td>2,668,000</td><td>32,016,000</td><td>18</td><td>3,408,000</td><td>40,896,000</td></tr>
<tr><td>9</td><td>2,742,000</td><td>32,904,000</td><td>19</td><td>3,482,000</td><td>41,784,000</td></tr>
<tr><td>10</td><td>2,816,000</td><td>33,792,000</td><td>20</td><td>3,556,000</td><td>42,672,000</td></tr>
</table>
1. 산학협력중점 교수 봉급표는 급여변동률과 상관없이 고정하여 운영함.
2. 호봉의 승급은 1년간 1회로 하되 매월 1일로 함.
3. 호봉 간 월 급여 차액은 74,000원으로 함.
4. 20호봉 이상은 가산 호봉 없이 20호봉에 준하여 고정 지급함.
5. 본교의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책정함.
6.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7. 1~20호봉 구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함.</td></tr>
</table>

이 홍

현 행

[별표 7] 비전임 교원 보수 지급 구분표

비전임 교원 보수 지급 보수표

구 분	금 액(원)	비 고
명예교수	생략	
석좌교수	생략	- 정규학기 강의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정규학기 강의가 없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방학기간 미지급) - 특강 1회시 400,000원 지급
객원교수	학기 주당 1시간인 경우 월133,333원	
	학기 주당 2시간인 경우 월266,666원	
	학기 주당 3시간인 경우 월400,000원	
	학기 주당 4시간인 경우 월530,000원	
	학기 주당 5시간인 경우 월660,000원	
	학기 주당 6시간인 경우 월800,000원	
	<신설>	
	<신설>	
	<신설>	
겸임교수	학기 주당 3시간인 경우 해당 학기 (3~8월, 또는 9월~다음해 2월 까지) 월400,000원	학기 주당 7시간 이상인 경우 초과강의료 지급표 [별표15]를 적용하여 지급함
	학기 주당 4시간인 경우 해당 학기 (3~8월, 또는 9월~다음해 2월 까지) 월530,000원	
	학기 주당 5시간인 경우 해당 학기 (3~8월, 또는 9월~다음해 2월 까지) 월660,000원	
	학기 주당 6시간인 경우 해당 학기 (3~8월, 또는 9월~다음해 2월 까지) 월800,000원	
초빙교수	연간 13,200,000원	- 월 1,100,000원씩 균등 지급 - 학기 주당 10시간 이상인 경우 초과강의료 지급표 [별표 15]를 적용하여 지급함
특임교수	생략	
연구교수	생략	
조교	생략	

[별표 16] 보직수당 지급 구분표

보직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지급대상	월지급액
교원	학과장/ 전공주임 (대학원전공주임, 트랙 주임교수 제외)	250,000

1. *급 : 호봉제 정규직, 연봉제 정규직을 포함한다.

개정

[별표 7] 비전임 교원 보수 지급 구분표(개정 2025.04.28.)

비전임 교원 보수 지급 보수표

구 분	금 액(원)	비 고
명예교수	생략	
석좌교수	생략	- 정규학기 강의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정규학기 강의가 없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방학기간 미지급) - 특강 1회시 400,000원 지급
객원교수	학기 주당 1시간인 경우 월133,333원	
	학기 주당 2시간인 경우 월266,666원	
	학기 주당 3시간인 경우 월400,000원	
	학기 주당 4시간인 경우 월530,000원	
	학기 주당 5시간인 경우 월660,000원	
	학기 주당 6시간인 경우 월800,000원	
	학기 주당 7시간인 경우 월930,000원	
	학기 주당 8시간인 경우 월1,060,000원	
	학기 주당 9시간인 경우 월1,200,000원	
겸임교수	학기 주당 3시간인 경우 해당 학기 (3~8월, 또는 9월~다음해 2월 까지) 월400,000원	학기 주당 7시간 이상인 경우 초과강의료 지급표 [별표20]를 적용하여 지급함
	학기 주당 4시간인 경우 해당 학기 (3~8월, 또는 9월~다음해 2월 까지) 월530,000원	
	학기 주당 5시간인 경우 해당 학기 (3~8월, 또는 9월~다음해 2월 까지) 월660,000원	
	학기 주당 6시간인 경우 해당 학기 (3~8월, 또는 9월~다음해 2월 까지) 월800,000원	
초빙교수	연간 13,200,000원	- 월 1,100,000원씩 균등 지급 - 학기 주당 10시간 이상인 경우 초과강의료 지급표 [별표 20]를 적용하여 지급함
특임교수	생략	
연구교수	생략	
조교	생략	

[별표 16] 보직수당 지급 구분표(개정 2025.04.28.)

보직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지급대상	월지급액
교원	대학원 및 대학 학부(과)장, 전공주임 (대학원전공주임, 트랙주임교수 제외)	250,000

1. *급 : 호봉제 정규직, 연봉제 정규직을 포함한다.

<table>
<tr><th>현 행</th><th>개정</th></tr>
<tr><td>2. 팀장 등 : 팀장, 실장, 센터장, 관장, 원장, 단장을 포함한다.
3. 계약직의 보직수당은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4. 센터장과 그 산하조직의 보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며,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단, IPP센터장은 제외)
5. <신설></td><td>2. 팀장 등 : 팀장, 실장, 센터장, 관장, 원장, 단장을 포함한다.
3. 계약직의 보직수당은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4. 센터장과 그 산하조직의 보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며,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단, IPP센터장은 제외)
5. 자율전공학부 학부장 및 전공주임교수 보직수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td></tr>
<tr><td>[별표 18] 통신비 지급 구분표
통신비 지급 구분표
(월지급액, 단위: 원)
<table>
<tr><th>구분</th><th>지 급 대 상</th><th>지급액</th><th>비고</th></tr>
<tr><td>2</td><td>대학원장(특수대학원포함),
학장, 전산정보실장,
도서관장, 박물관장,
대학원 및 대학 학부(과)장,
각 부서팀장
UHS미래위원회 위원장,
교육혁신원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교육질관리센터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양교육센터장.</td><td>50,000</td><td>직무
대리
포함</td></tr>
</table>
* <신설></td><td>[별표 18] 통신비 지급 구분표(개정 2025.04.28.)
통신비 지급 구분표
(월지급액, 단위: 원)
<table>
<tr><th>구분</th><th>지 급 대 상</th><th>지급액</th><th>비고</th></tr>
<tr><td>2</td><td>대학원장(특수대학원포함),
학장, 전산정보실장,
도서관장, 박물관장,
대학원 및 대학 학부(과)장,
전공주임(대학원전공주임, 트랙주임교수 제외),
각 부서팀장
UHS미래위원회 위원장,
교육혁신원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교육질관리센터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양교육센터장.</td><td>50,000</td><td>직무
대리
포함</td></tr>
</table>
* 자율전공학부 학부장 및 전공주임교수 통신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td></tr>
<tr><td>부 칙(2025.1.23.)
제1조(시행일)이 내규는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조건을 벗어나 지급된 수당에 대한 경과조치)제1조에서 정한 시행일 이전에 개정 전 내규 "제3조(적용범위) 제2항"에 따른 지급 제한조건을 벗어나 지급된 수당의 시행일자는 각 수당의 최초 지급일자로 소급 적용한다. 단, 총장직무대리 수당에 관한 지급은 보류한다.</td><td>부 칙(2025.1.23.)
제1조(시행일)이 내규는 202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조건을 벗어나 지급된 수당에 대한 경과조치)제1조에서 정한 시행일 이전에 개정 전 내규 "제3조(적용범위) 제2항"에 따른 지급 제한조건을 벗어나 지급된 수당의 시행일자는 각 수당의 최초 지급일자로 소급 적용한다.(개정 2025.04.28.)</td></tr>
<tr><td><삽 입></td><td>부 칙(2025.04.28.)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04월 28일에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별표 5] 산학협력중점교원 보수표"는 제7호에 의해 2025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3. (경과조치) 제12조【정액급식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td></tr>
</table>